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117
------	------

제출일자 : 2021. 8. 24.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7. 23. ~ 2021. 8. 12.) 결과: 별도의견 없음
- 2) 신·구 조문 대비표: 별첨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반영(여성가족과)

1. 제안이유

전면개정되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내용을 반영하여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 및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강화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제명 변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나. 사물주소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광고비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 라. 안내도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변경(안 제6조~제12조)
- 바. 손해배상공제 가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로명주소법」 제9조, 제11조 내지 제13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7조, 제29조, 제31조, 제33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 제43조, 제52조, 제53조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 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

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구에서 발행한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 비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주소정보 사용 및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시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소정보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p> <p>[시행 2015. 7. 1.]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809호, 2015. 5. 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부동산정보과), 02-2627-2495</p> <p>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p> <p>[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 호, 2021. . . , 전부개정]</p> <p>----- ----- 02-2627-2132</p> <p><삭 제></p> <p>제1조(목적) ----- 「도로명주소법」 및 ----- 위임한 ----- -- 사항을 규정함----- --.</p> <p>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p>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p> <p>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p> <p>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만</p>	<p>위치표시</p> <p>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p> <p>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p> <p>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p> <p><삭 제></p> <p>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p>
--	--

해당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한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 비용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 ① 구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 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부동산정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부동산정보과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외의 경우는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

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삭 제>

<삭 제>

제15조(위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주소정보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또는 유지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3.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며 입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한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의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 2. 계약기간 및 금액
-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 4. 도로명주소시설 일제조사 계획
-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 2. 계약기간 및 금액
-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 제>

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계약의 목적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의 모집방법

4. 계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5.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 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금천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교육·예비

제13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삭 제>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교육과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

③ 구청장은 구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 주소정보-----

법 제27조 -----
--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시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구민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

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 계공무원

-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삭 제>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소정보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 호선한다.

③ ---- 임명 또는 ----, 위원장을 제외한 ----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4 (생략)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3·4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 하되, 한 차례만 -----.

② -----
-----라도 원을 해촉-----
-----.

1.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

----- 소집한다.

② -----의 규정에 의한 -----

장소 및 -----
----- 회의 개최 -----.

③ -----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

② -----
----- 위원장, 부위원장 -----
-----.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동산정보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1. 회의일시 및 장소
-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 3. 토의 및 심의결과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제10조(위원회의 간사) -----
-- 1인- --, --- 주소정보업무담당부서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1. -----
- 2. -----
- 3. ----- 진행사항
-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
-----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고지방법) ① 법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방문 고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고지 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금천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못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 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515호, 2007. 11. 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609호, 2010. 04.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16호, 2010. 08. 19)(수수료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삭 제>

부칙

제1조(시행일) (현행과 같음)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②·③ 생략

30. 부칙(제646호, 2011. 01. 01)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삭 제>

<삭 제>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팀 김이화
연 락 처	02-2627-2134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정) 2007.11.28 조례 제 515호
(전문개정) 2010.04.07 조례 제 609호
(일부개정) 2010.08.19 조례 제 616호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 2011.01.01 조례 제 646호
(일부개정) 2015.05.18 조례 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는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에 관련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

제3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 만 해당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보편적으로 사

용한 건물 번호판의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구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0.08.19>

제4조(원인자부담)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제3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5조(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구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 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부동산정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② 부동산정보과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제4장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7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 주소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3.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에 소재하며 입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한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주소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주소시설 일체조사 계획
5. 도로명주소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주소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9조(도로명주소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주소 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주소시설을 성실히 유지·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

제11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체의 이름과 상징형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3. 광고주의 모집방법
4.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5. 제작·설치된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도로명주소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13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14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금천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교육·예비군교육과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서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도로명주소 안내도 부착, 도로명주소안내판 설치 등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등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도로명주소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2. 도로명주소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 ③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동산정보과장이 된다.
<개정 2015.5.18.>

-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등

제21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그 밖의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고지방법) ① 법제18조 제2항 규정에 따른 방문 고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고지 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고지를 할 수 있다.

1. 고지 대상자가 금천구가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고지 대상자를 두 번 이상 방문하였으나 고지 대상자를 만나지 못하여 방문 고지를 못한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통한 서면 고지를 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

제24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직접 방문고지한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 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제515호, 2007.11.28)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609호, 2010.04.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16호, 2010.08.19)(수수료징수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 중 “수입증지로”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로 한다.
- ②·③ 생략

부칙(제646호, 2011.0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09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5.18.)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부동산정보과장”으로 한다.

관계 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74호, 2020. 12. 8, 전부개정]

제9조(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거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주(支柱) 또는 시설(이하 “지주등”이라고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에 지주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거쳐 해당 위치에 맞는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을 지주등에 표기하여야 한다.

1. 가로등·교통신호등·도로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2. 전주 및 도로변 전기·통신 관련 시설

③ 및 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군수·구청장은 지주등의 본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는 데 지주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주등을 사용하려면 미리 그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주등의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지주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사용되는 지주등을 교체·이전·설치·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장소와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가 필요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건물번호의 변경 등) ① 건물등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건물등의 증축·개축 등으로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주소 사용의 편의를 위하여 건물번호 변경이 필요한 경우(도로명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거주·활동의 종료 등으로 인하여 건물번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물등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도로명주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에게 고지하며,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의 변경과 폐지의 기준·절차·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건물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 ①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거나 건물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

을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교부 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지체 없이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건물번호판을 관리하여야 하며,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재교부받거나 직접 제작하여 다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에 대하여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재교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건물번호판을 무상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 신청 절차, 설치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도로명주소의 사용 등) ①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한다.

②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표기 및 위치 안내를 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의 표기
2. 각종 인허가 등 행정처분 시 주소 표기
3. 공공기관의 주소 표기
4.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기
5. 위치안내표시판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6.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
7. 그 밖에 주소 표기 및 위치 안내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의 주소를 도로명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할 것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이 아닌 자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아니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

⑥ 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제6항, 제8조제5항,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부여·변경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이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부상의 주소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22조(국가기초구역 등의 설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각 국가기초구역마다 부여하는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등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전국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통보받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해당 시·도 단위로 국가기초구역번호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시·군·자치구별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를 배정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배정받은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고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기초구역 또는 국가기초구역번호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5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기본단위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설정·변경·폐지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변경·폐지의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국가지점번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점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국가지점번호는 구조·구급 활동 등의 위치 표시로 활용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철탑, 수문, 방파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구조·구급 및 위치 확인 등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시설물에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제4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가 적절한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표기·확인의 방법 및 절차,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물주소)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할 수 있다. 사물주소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육교 및 철도 등 옥외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2. 옥외 대피 시설
 3. 버스 및 택시 정류장
 4. 주차장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치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위치확인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물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물주소판의 제작·설치 및 관리에 드는 비용은 해당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기준 및 절차, 사물주소판의 설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⑩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⑫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하여 훼손되거나 없어진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체 또는 철거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건물등·시설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및 임차인은 그 건물등·시설물 또는 토지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설치, 교체 또는 철거 업무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각종 공사나 그 밖의 사유로 주소정보시설을 훼손·제거하거나 기능상 장애를 초래한 자는 해당 주소정보시설을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그 사업으로 인하여 주소정보시설의 설치·교체 또는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설치·교체 또는 철거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는 그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의무자가 제5항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 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0조(국가지점번호판의 철거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을 철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

당 시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표기된 국가지점번호
 2. 철거하려는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의 변경 전·후 사진
 3. 국가지점번호판 또는 시설물을 철거한 일자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지점번호 표기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관리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긴급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국가지점번호를 정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거나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설물에 표기한 국가지점번호 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고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1.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한 시설물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현황
 2.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현황 및 설치 계획
 3. 각종 개발 현황
 4. 각종 안전사고 등의 발생 현황
 5. 그 밖에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활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3조(사물주소판의 설치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고지 받은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사물주소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유형, 지역의 여건 및 설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물주소판의 설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등의 승인을 받아 그 설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6미터 이상의 높이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을 안내하는 표지판 등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높이·크기 등을 고려해 설치하는 높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사물주소판을 관리해야 하며, 사물주소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장등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받아 부착·설치하거나 직접 제작하여 설치해야 한다.

④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해

당 시설물을 철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철거 예정일 또는 위치 변경 예정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에 필요한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2조(주소정보 산업의 진흥)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분야(이하 “주소정보산업”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소정보산업의 육성시책 마련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내외 주소정보산업에 관한 현황 및 기술 동향 등의 조사 및 공개
나. 주소정보산업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다. 주소정보의 국제협력 및 국외 진출 지원
라. 주소정보의 공동이용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및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2.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 유형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드론, 지능형 로봇,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용 등
나. 실내 위치의 안내
다. 사물인터넷(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사람과 사물 또는 사물과 사물 간 정보를 상호 공유·소통하는 지능형 기술을 말한다)의 활용
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주소정보산업에서 활용하는 주소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의 편집·가공 및 유통
나. 산업 분야에서 사용·관리하는 주소정보의 품질인증
다. 민간부문에서 사용하는 주소정보의 보안성 검토
4.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5.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지원
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6. 주소정보와 관련된 사업·연구 등을 위한 협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제53조(주소정보관리시스템) ① 주소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는 중앙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도에는 시·도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시·군·구에는 시·군·구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둔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주소정보관리시스템에서 작성·관리하는 주소정보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